



### 5-4 체류카드의 반납

체류카드가 실효했을 때는 신속하게 법무대신에게 반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.

체류카드로 인정되는 외국인등록증명서도 같습니다.

실효하는 경우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.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- 더 이상 중장기체류자가 아니게 되었을 때  
14 일 이내로 법무대신에게
- 유효기간이 만료했을 때  
14 일 이내로 법무대신에게
- 새로운 카드를 받았을 때  
바로 법무대신에게
- 재입국허가 (미나시 재입국허가를 포함) 를 받지 않고 출국했을 때  
바로 법무대신에게
- 재입국허가기한까지 재입국하지 않았을 때  
14 일 이내로 법무대신에게
- 재교부 신청해서 새로운 카드를 수령하고 나서 실효한 구 카드를 발견했을 때  
발견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로 법무대신에게
- 사망했을 때  
동거하는 친족 · 동거자가 사망한 날 (또는 사망 후 카드를 발견한 날) 로부터 14 일 이내로  
법무대신에게

법무대신에게의 반납은 지방입국관리관서에 직접 지참하거나 아래로 우송하십시오.

(우송처) ※봉투 앞면에 「在留カード返納 (체류카드 반납)」이라고 기재하십시오.

〒135-0064 東京都江東区青海 2-7-11 東京港湾合同庁舎 9階

東京入国管理局おだいば分室あて

(〒135-0064 도쿄도 에토쿠 아오미 2-7-11 도쿄코완합동청사 9층

도쿄 입국관리국 오다이바 분실 앞)

전화 03-3599-1068